

대두유 중국 수입 쿼터제 폐지 관련

베이징 aT센터

2011.4.8

중국 상무부는 부족한 양유의 수입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2006년 1월1일부터 대두유, 팜유, 채소씨유 수입관세 쿼터제와 수입 국영 무역관리 제도를 취소하고 <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>에 근거하여 자동수입허가관리를 실시하며 <물품(貨物)자동수입허가관리방법>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절차를 거치게 함.

<자동수입허가증>은 특별한 상황 이외에 신청한 수입허가에 대해 비준을 하고 발급하는 수입허가증임

1. 자동 수입 허가 신청

□ 수입 기업체 자격조건 :

- ① 공상기관에 등록이 되고 사업자 등록증 영업 범위에 식용 식물유 및 관련 식품의 생산, 경영이 포함되며 최근 년도 사업 관련 검사에 합격된 기업이어야 하며 외자투자기업인 경우도 최근 년도검사에 합격된 기업이어야 함
- ② 외자투자기업은 수출입 경영권 혹은 분할 판매권이 있어야 하며 생산형 외상투자기업은 영업 범위에 반드시 생산, 사용, 식용유 업무 경영이 포함되어야 함.
- ③ 국가식품위생안전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고 생산기업은 반드시

<전국공업제품생산허가증>을 받은 기업이어야 함

- ④ 관련 상회, 산업협회의 자율(自律)적인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
- ⑤ 최근 3년간 해관, 외화관리, 공상국, 세무국, 품질검사 등에서 부정 사유가 없어야 하며 수입 위법 기록이 없어야 함
- ⑥ 상무부 기타 관련조건에 부합되어야 함

☐ <자동수입허가증> 신청절차

이상 조건에 부합되는 수입 기업체는 상무부 관할기관에 등록하는 동시에 관련 자료를 ‘수입조정조’에 제출하여 ‘수입조정조’가 수입기업자격기준에 따라 기업의 수입자격을 심사함

☐ 특기사항

올해 1월1일부터 중국은 수입된 후 다시 날개포장 혹은 재가공을 거치지 않는 식용 식물유에 대해서는 통관할 때 <식물검역증서> 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며,

기타 식용식물유는 <수입식물과 식물제품 모험분석 관리규정>에 의해 수출국 검역국에서 제출한 가공방법 정보에 대한 평가를 거쳐 평가결과에 의해 <식물검역증서> 제출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.

그러나 <식물검역증서>를 자발적으로 제출한 식용유에 대해서는 평가가 면제되는 등 수입 확대를 위한 규정을 실시하고 있음.

□ 심사기간

식물유 자동수입허가심사는 원칙상 8일 근무일이며 자동수입허가증 발급은 원칙상 2일 근무일임

2. 자동 수입 신청

□ 신청기업 제출 서류

<자동수입허가증>이 발급된 기업은 공상등기 등록지역 소속관할 기관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함

- ① 수취인이 물품수출입에 종사하는 자격증서, 등록등기문서 혹은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
(이상 증서, 문서는 올해 처음 신청하는 기업에서만 제출)
- ② 자동수입허가증신청표
- ③ 물품수입계약서
- ④ 행정기관에서 비준한 경영범위 관련 법적규정 서류 사본
- ⑤ 위탁대리 수입일 경우 위탁인과 수입경영자가 체결한 대리수입계약협의서(정본)
- ⑥ 수입물품 용도 혹은 최종 사용자에 대해 법률 법규상 특수 규정이 있는 물품은 반드시 수입화물 용도 혹은 최종 사용자가 국가 규정에 부합되는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함
- ⑦ 상무부가 규정한 기타 서류

< 2011년 자동수입허가관리물품목록(식물유) >

분류	HS코드번호	제품 명칭
식물유	1507100000	대두유(조유)
	1507900000	정제 대두유 및 분리물
	1511100000	팜유(조유)
	1511901000	팜 올레인
	1511902001	팜 스테아린(50도≤용점≤56도
	1511909000	기타 정제팜유
	1514110000	저에루크산 유채유(조유)
	1514190000	기타 저에루크산 유채유
	1514911000	레이트유 또는 콜자유(조유)
	1514919000	겨자유(조유)
	1514990000	레이트유 또는 콜자유(정제유)